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7. 3.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6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9. 7. 3.)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 성 대

가. 개정이유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구 소속공무원에게 친절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절봉사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그동안 동 조례중 미비하였던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를 표창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의 경우에 친절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5조제2항)
- 표창방법 및 시상금등의 현행 조항을 재정리하고,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
-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문안정비(안 제12조)
- 표창장(안) 및 공적조서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5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부상은 물론 기장 또는 배지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친절봉사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 조례중 일부 적합치 않은 자구를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에는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한 자를 표창대상에 포함시켰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친절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는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및 시상금 외에 기장 또는 배지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는 표창에 새겨진 휘장을 마포구 휘장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되나, 안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표창대상자의 추천인 범위를 '시민'에서 '구민'으로 축소 개정하려는 것은 다소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본 개정조례안 제13조 제2항에 표창대상자 추천인 범위를 "시민으로부터"에서 "구민으로부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현행조례대로 "시민으로부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알겠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7. 3. 신 봉 현 위원외 1
- 나. 수정이유 :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 “국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을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으로 수정함 (안 제13조제2항)

7. 심사결과 : 수정 (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수정 (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7. 3.

제 안 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동 개정조례안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을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으로 수정함.(안 제13조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중 "구민으로부터" 를 "시민으로부터"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생략) ②<u>시민으로부터</u>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현행과 같음) ②<u>구민으로부터</u>..... </p>	<p>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개정안과 같음) ②<u>시민으로부터</u>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9. 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구소속공무원에게 친절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절봉사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 효용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그동안 동 조례중 미비하였던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자를 표창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의 경우에 친절봉사상을 수여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5조제2항)
- 표창방법 및 시상금등의 현행 조항을 재정리하고,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
- 공적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대한 문안정비(안 제12조)
- 표창장(안) 및 공적조서 변경(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 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 ※ 첨부 1. 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현저한 자”를 “현저한 자 및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표창장) ①표창장은 구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②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친절봉사상을 수여한다.

제7조제1호중 “지역적 발전”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표창방법 및 시상금등)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하거나,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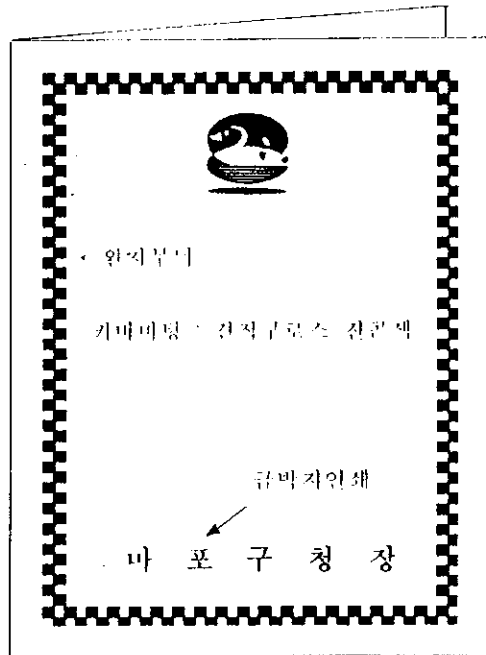
제13조제2항중 “시민으로부터”를 “구민으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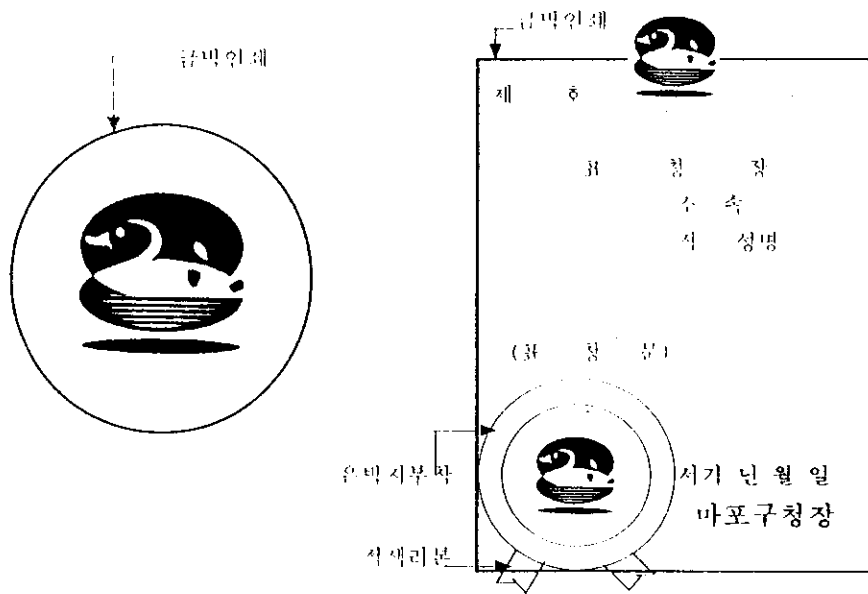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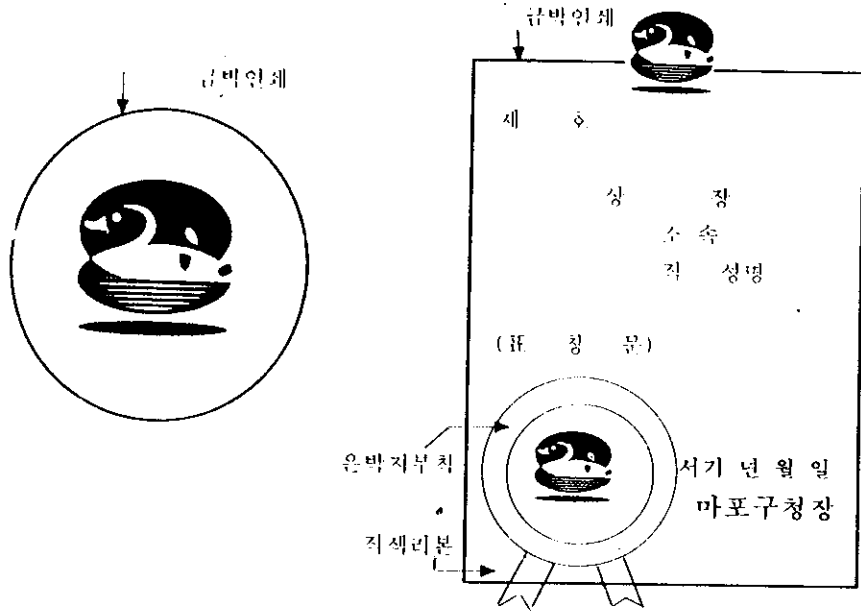
<방지 제1호 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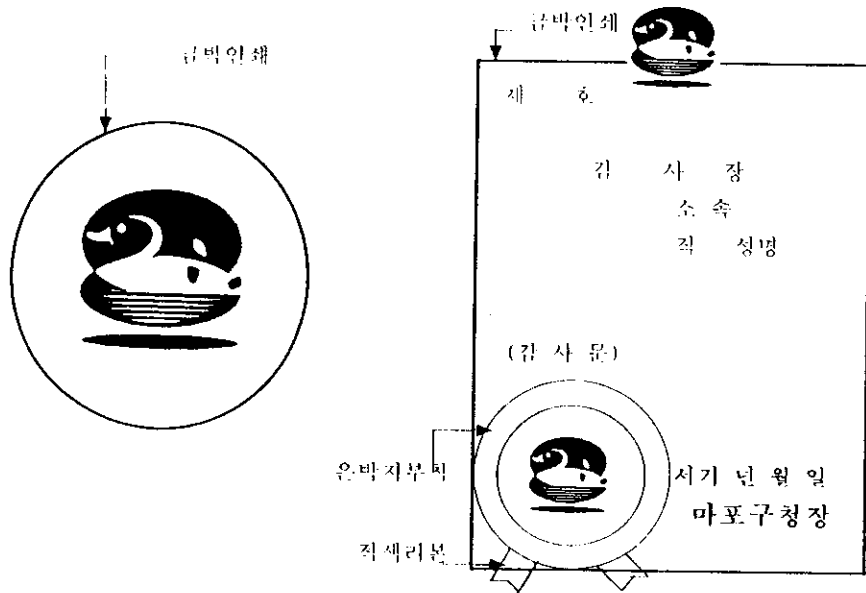
<방지 제2호 시식>



< 명지 제3호 서식 >



< 명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원명)		
②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 급(직급·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	⑫ 공 적 분 야 코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202-2(2-1)일(1)
1984. 1. 2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주요학력 및 경력

⑱ 년월일	⑳ 이 력	㉑ 년월일	㉒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년월일	㉔ 내 용	㉕ 년월일	㉖ 내 용

㉗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u>현저한</u>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p>	<p>제2조(표창대상) ----- ----- <u>현저한 자 및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u>----- -----.</p>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u>소속기관</u>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p>	<p>제5조(표창장) ①-----<u>구소속기관</u> ----- -----.</p>
<p>1. (생략)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u>근대화</u>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생략)</p>	<p>1. (현행과 같음) 2. ----- -- <u>발전과</u> ----- ----- 3.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②<u>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친절봉사상을 수여한다.</u></p>
<p>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p>1. 구정발전과 <u>지역적 발전</u>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p> <p>2.~3. (생략)</p>	<p>제7조(감사장) ----- -----.</p> <p>1. ----- <u>지역사회 발전</u>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8조(표창방법 및 <u>부상</u>) ① (생략).</p>	<p>제8조(표창방법 및 <u>시상금등</u>) ①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실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⑤ (생략)</p> <p>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생략)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하거나,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p> <p>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 -----, 구의 ----- -----.</p> <p>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현행과 같음) ②구민으로부터 ----- ----- ----- -----.</p>